



: 2017-05-05

## 서 울 고 등 법 원

### 춘천제1민사부

### 판 결

사 건 (춘천)2016나1606 토지인도 등

원고, 피항소인 A종종

피고, 항소인 B

제 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6. 9. 6. 선고 2016가단1789 판결

변 론 종 결 2017. 2. 22.

판 결 선 고 2017. 4. 5.

### 주 문

-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,600,000원과 2016. 3. 3부터 강원 홍천군 C 목장용지 149,304m<sup>2</sup>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,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-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

: 2017-05-05

청구취지: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목장용지 149,304m<sup>2</sup>를 인도하고, 1,600,000 원 및 2015. 3. 3.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2,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항소취지: 제1심판결 중 피고 폐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6. 1. 30.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C 목장용지 149,304m<sup>2</sup>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와 그 지상 1층 철파이프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98m<sup>2</sup>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를 차임 합계 1,000만 원(= 200만 원/년 × 5년, 200만 원은 계약 시, 800만 원은 2007. 1. 10. 각 지급), 임대차기간 2006. 1. 30.부터 2010. 12. 30.까지로 정하여 임대(이하 '제1 임대차계약'이라 한다)하였다. 제1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"5년 후 재계약(5년 연장)"이라고 정하였다.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축사로 사용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1. 3. 2.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차임 연 240만 원, 임대차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(이하 '제2 임대차계약'이라 한다)하였다. 피고는 원고에게 2011. 5. 26. 2011년분 차임 중 200만 원을, 2012. 1. 10. 2011년분 차임 중 나머지 4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, 2012. 5. 8. 2012년분 차임 중 200만 원을, 2013년, 2014년, 2015년에 각 해분 차임 중 각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6. 2. 14. 피고에게 제2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



간이 종료되는 2016. 3. 2. 경과 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줄 것을 통지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(임대차계약서,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), 갑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### 가. 원고의 주장

- 1) 피고는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,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6. 2. 14. 제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.
- 2) 또한, 제2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.
- 3)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, 미지급 차임 160만 원 및 2015. 3. 3.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2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.

### 나. 판단

#### 1)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

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2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는 "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"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러나 민법 제640조, 제641조에 의하면 전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죽목, 채염,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민법 제652조에 의하면 제640조, 제



: 2017-05-05

64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.

따라서 위 각 규정에 따라 제2 임대차계약 제4조는 효력이 없고,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야 제2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그런데 피고의 차임연체액은 160만 원( $= 40\text{만 원}/\text{년} \times 4\text{년}$ )으로 2기의 차임액 480만 원( $= 240\text{만 원}/\text{년} \times 2\text{년}$ )에 달하지 아니하므로,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제2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.

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 2)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

앞서 인정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임대차계약은 2016. 3. 2. 24:0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, 미지급 차임 160만 원 및 2016. 3. 3.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러나 원고의 청구 중 2015. 3. 3.부터 2016. 3. 2.까지 연 2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.

## 3. 항변에 관한 판단

### 가. 피고의 항변

피고는 2006. 2. 15.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650만 원에 매수하였다.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청구를 하였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### 나. 판단

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



: 2017-05-05

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,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.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권 제도의 목적,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,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48364 판결).

갑 제6호증,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, ① D은 1997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축사로 사용한 사실, ② D은 사료 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홍천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신축한 것으로 신고하였고, 홍천군수는 1997. 2. 3.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D으로 등록한 사실, ③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D의 연체차임이 있어서 피고는 2005. 12. 20. 원고에게 D의 2003년, 2004



: 2017-05-05

년, 2005년 연체차임 합계 380만 원을 대위 변제한 후 2006. 1. 30. 원고와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, ④ 피고는 2006. 2. 15.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650만 원에 매수한 후 D에게 매매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앞서 본 법리에 따라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,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순차로 매매 등 소유권취득의 유효한 원인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(위 대법원 2013다48364 판결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).

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,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이어야 한다.

살피건대,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D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일용 이 사건 건물이 D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, 이 경우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부등산등기부 등과 같은 비증의 추정력, 즉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는 것은 아닌바(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다913 판결 참조),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D은 "1997년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·사용하던 중 사료 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기에 원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관할관청에 본인이 신축한 건물이라고 신고를 하였다."라는



: 2017-05-05

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, ② 제1, 2 각 임대차계약에서는 이 사건 건물까지 임대차 목적물로 삼은 점을 종합하면,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D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D이라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아닌 이상,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,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#### 4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, 미지급 차임 160만 원 및 2016. 3. 3.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,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 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김재호



: 2017-05-05

판사 박성구

판사 지창구